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8회 임시회(2021. 4. 1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1-31
----------	-------

2021. 4. 19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도시안전과)
- 나. 제 출 일 : 2021. 4. 5.
- 다. 회 부 일 : 2021. 4. 7.

2. 제출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소집수당 조항을 신설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근거 조항 신설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타
 - 1) 입법예고 : 2021. 2. 15.~ 3. 8.(의견 없음)

2)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3) 규제개혁심의위원회 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

- 안 제8조의 신설되는 조항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 제2항, 제3항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임무 수행의 활동수당 지급 근거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.

나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집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음.
- 소집수당을 ‘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’로 적용한 것은 서울특별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타지방자치단체 최근 조례 개정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같은 것으로 파악됨.

[표 1.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단가 개정 현황(4월 현재)]

구분	일반직공무원 9급	일반직공무원 7급
지방 자치단체	부산광역시 사하구(4hr) 대전광역시 동구(4hr) 오산시, 제천시, 여주시, 삼척시, 익산시, 안산시, 영암군, 무주군, 정읍시, 남원시, 통영시(4hr) , 남해군, 밀양시, 양평군, 하남시, 고창군, 의왕시, 영양군, 횡성군(4hr) , 목포시, 화성시	대전광역시 유성구(4hr)

- 다만, 수당의 단가기준을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¹⁾으로 준용하였는데 ‘시간외근무수당 단가’는 적용하고 1일에 4시간,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(1일 8시간 초과 금지)은 준용하지 않고 있어, 기준 적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의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내역 등을 통한 논의가 필요가 보임.
- 이번 활동 수당 지급사항의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활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아울러, 자연재난 방재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[표 2. 지역자율방재단 현황(기능별, 동별)] (2021 현재)

(단위 : 명)

합 계	상황총괄반	현장예찰반	응급복구반	장비지원반	재난구호반	홍보반
316	39	68	69	38	74	28

(단위 : 명)

구 분	공 덕	아 현	도 화	용 강	대 흥	염 리	신 수	서 강
일 반	11	14	13	21	22	13	22	18
구 분	서 교	합 정	망원1	망원2	연 남	성산1	성산2	상 암
일 반	37	16	24	21	17	19	20	28

1)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1590호)

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,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[관 계 법 령]

「자연재해대책법」

제66조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, 봉사단체, 방재 관련 업체,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, 대응,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·대응·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

제60조 (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·군·구 단위로 구성·운영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 단위로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<중략>

제61조(소집 등)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5조 (예산 지원)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(實費)로 지급할 수 있다.